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9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이해식 · 신정훈
차지호 · 김준혁 · 이재정
윤종균 · 허 영 · 윤건영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,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1491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2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

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·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 ·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· 국무위원 ·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· 국 가정보원장 ·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· 금융위원회 위원장 ·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·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 · 국세청장 · 검찰총장 · <u>경찰청장</u> · 합동참 모의장 · 한국은행 총재 · 특별 감찰관 ·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 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헌법재판소재판 관등”이라 한다)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 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 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 통령 ·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	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찰청장 · 중대범죄</u> <u>수사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 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